

행정자치부

시정요구

제 목 ○○상수도 수질기준 초과시설 조치 부적정

기 관 명 부산광역시(○○○○○본부)

내 용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도시설 규모에 따라 100명 이상 2천 500명 이내의 급수인구에 계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⁹³⁾로서 1일 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수도이며, “소규모급수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명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급수시설로 되어 있다.

또한 「수도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도를 통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등이 함유되어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⁹⁴⁾는 수돗물이 수질

93) “일반수도”란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를 말한다.

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그 위반내용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알리고 수질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 및 정수에 대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4항에 따라 관할관청은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수질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 해당지역의 주민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질검사·비상급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수도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상수도를 적정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소규모수도시설⁹⁵⁾ 관리 및 운영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수질검사 결과와 점검결과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

94)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 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95) 소규모수도시설 = 마을상수도 + 소규모급수시설

치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같은 조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소규모수도 시설의 유지 또는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수도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인가관청은 수도사업자가 같은 법 제27조제1항, 제37조제1항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일반수도 사업의 인가를 취소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부 ○○사업소는 2017. 3월 현재 ○○마을상수도(250m³/일) 등 25개소의 소규모수도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합동감사 시 ○○사업소에서 운영 중인 소규모수도시설 중 마을상수도 시설의 최근 3년간(2014년~2016년) 수질검사⁹⁶⁾결과를 확인한 결과, 기장군 ○○면의 ○○, ○○, ○○, ○○○ 총 4개 ○○상수도 시설에서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인 비소 등이 2014년부터 먹는물 수질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하였으며, 정부합동감사 사전조사 기간(2017. 2. 6. ~ 2. 17.) 중 상기 ○○상수도 4개소의 수돗물을 채수하여 수질을 분석한 결과, 비소가 먹는물 수질기준(0.01mg/L 미만)을 초과하였다.

【표 1】 기장군 ○○면 ○○상수도 4개소 수질검사 결과

시설명	시설용량 (급수세대)	수질검사 시기	비소(0.01mg/L) 초과현황	망간(0.05mg/L) 초과현황	감사 시 지적사항
○○	150톤 (49세대)	2014	4회 불합격 후 재검사 미 실시	-	「수도법」 제26조 및 제37조 위반 (33회)
		2015	3회 불합격 후 재검사 미 실시	-	
		2016	1회 불합격 후 재검사 미 실시	-	
○○	150톤 (64세대)	2014	-	1/4분기 1회 불합격 후 재검사 미 실시	

96)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비소는 연 1회, 망간은 분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질기준 초과 시에는 수질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2015	3회 불합격 후 재검사 미 실시	2/4분기 2회 불합격, 3/4분기 2회 불합격, 4/4분기 3회 불합격 후 재검사 미 실시	
		2016	1회 불합격 후 재검사 미 실시	1/4분기 1회 불합격, 2/4분기 1회 불합격, 3/4분기 1회 불합격 후 재검사 미 실시	
○○	150톤 (41세대)	2014	4회 불합격 후 재검사 미 실시	-	
		2015	3회 불합격 후 재검사 미 실시	-	
		2016	1회 불합격 후 재검사 미 실시	-	
○○○	50톤 (26세대)	2014	-	-	
		2015	1회 불합격 후 재검사 합격	-	
		2016	1회 불합격 후 재검사 미 실시	-	
합 계			22회	11회	

※ ○○○○○본부 ○○사업소 제출자료 재구성

【표 2】 정부합동감사 시 ○○상수도 4개소 수질검사 결과

구분	○○	○○	○○	○○○	감사 시 지적사항
비소 분석결과 (mg/L)	0.028	0.01	0.026	0.024	먹는물 수질기준 비소항목(0.01mg/L 미만) 초과

※ ○○○○○○○○청 수질 분석결과 재구성(○○○○과-000, 2017.0.0.)

○○○○○○본부 ○○사업소는 마을상수도의 수돗물이 수질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면 수질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수시로 검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수질기준에 적합할 때까지 재검사를 하지 않았고, 수질개선을 위한 시설개선(비소 제거장치 설치 등), 수질검사 강화 등의 조치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수도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수돗물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

질을 함유하여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지체 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고 비상급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에도 정부합동감사 시까지 ○○상수도 급수 중단 및 비상급수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상기 ○○상수도 4개소의 급수구역에는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상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급수공사비 및 수도요금 부담 등으로 인한 주민반대를 이유로 ○○상수도를 폐지하지 않았으며, 또한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하여 주민설득 및 홍보 등의 노력도 부족하였다.

○○○○○본부 ○○부와 ○○부는 ○○사업소에서 운영 중인 ○○상수도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음에도, 기장사업소의 수질검사 강화 및 급수중단, 비상급수계획 수립 등의 조치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은

[시정] 「수도법」에 따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수돗물의 공급 중지 및 폐지 등 법령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즉시 이행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